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30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□ 변경 사항: ①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모투자신탁의 환해지 비율 변경 (70%이상 → 60%이상)

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7. 13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5. 31 기준</u>
	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6. 27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6. 27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6. 30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6. 30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(1)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


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 준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(2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봄	<u>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 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</u>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</u> (2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 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</u> (3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 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 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 준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정정	〈신 설〉 (3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 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 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	<u>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 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</u>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</u> (3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 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

[illegible]

		합한 것으로 봄	적합한 것으로 봄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모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율 변경	4) 환위험관리 ① 환헤지 전략 및 목표 헤지 비율 : (생략) 환헤지 전략은 외화자산에 대하여 <u>70%</u> 이상 주1)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, 이 헤지비율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. 주1) 목표 헤지비율은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,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	4) 환위험관리 ① 환헤지 전략 및 목표 헤지 비율 : (생략) 환헤지 전략은 외화자산에 대하여 <u>60%</u> 이상 주1)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, 이 헤지비율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. 주1) 목표 헤지비율은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,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표준편차 변경	<u>표준편차 : 8.53%</u>	<u>표준편차 : 5.72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 -	<u>2023. 5. 31 기준</u> <u>2023. 6. 27 기준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6. 27 기준</u>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<u>증권대여 또는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내역 기재</u> <u>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〉 및 〈주식의 매매회전율〉 기</u>

			<u>재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6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6. 27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제6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6. 27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6. 30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 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24기(2021.12.31) 제23기(2020.12.31)	제25기(2022.12.31) 제24기(2021.12.31)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 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6. 30 기준</u>